

주주총회 안내문

주주각위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 여러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참석을 못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동봉한 별첨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21년 5월 03일(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주)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

- 별첨: 1. 소집통지서
2. 참석장, 대리위임장
3. 위임장
4. 부의 안건에 관한 내용

2021년 04월 19일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제6기(2020.1.1 ~ 2020.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5월 03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

3. 부의안건

제1호 안건: 제6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사내이사 곽요환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4. 지참서류

1) 참석증

2) 개인신분증

3) 개인인감도장(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4) 개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주주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및 참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1년 4월 19일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대표이사 하 태 석 [직인생략]

참 석 장

본인은 ㈜이시스코스메틱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일시: 2021년 5월 03일(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표명: (인)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

대 리 위 임 장

본인은 _____ 을(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1년 3월 26일
개최되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일시: 2021년 5월 03일(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표명: (인)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

위 임 장

주주번호	
------	--

소유주식현황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	

본인은 _____ 을 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5월 03일 개최되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권한

번호	주 주 총 회 목 적 사 항	찬성	반대
1	제6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곽요환 선임의 건		
3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 의안의 찬부표시는 해당란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목적사항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2021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명/주주성명 :

(인)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

[별첨] 부의안건에 관한 내용

제2호 안건: 사내이사 곽요환 선임의 건

직책명	성명	출생년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사내이사	곽요환	1980.12.08	전) 폭스바겐 현) 이시스코스메틱 공장장	이사회	-

제3호 안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1) 주요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한도 퇴직금의 50%에서 연봉의 200%로 변경

(2) 세부내용: 하기내용 참고

원안	개정안
제6조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